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6
----------	------

제출연월일: 2025. 12. 5.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체육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중구지역과 타 지역 이용자와의 차별화로 중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반환규정 정비로 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관련 별표 신설, 감면대상 등 정비(안 제8조)

- [별표 5]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정비
 - 감면율 100% 대상 기준 명확화: 중구 대표팀 연습목적 사용 시 4주, 주16시간 이내
 - 감면율 50% 대상 추가: 장기복무 제대군인, 체육회 주최 행사

나.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관리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규정 정비(안 제9조)

다. 체육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개정(별표 2, 별표 4)

-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타 지역 이용자 50% 추가
- [별표 4]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타 지역 이용자 10% 추가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21조의3 별표3의2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의 규정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45616호, 2025. 11. 20.)

라. 입법예고: 2025. 10. 16. ~ 11. 5.(20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는다”를 “않으며 반환할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일”을 “사용개시일”로,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을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이용일수”를 “미이용일수(횡수)”로,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공제 후 반환”을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3근무일”을 “근무일 3일”로 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횟수)에 해당하는 금

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제10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u>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p> <p>1. 면제</p> <p>가.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나. <u>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2. <u>100분의 80 경감</u></p> <p>3. <u>100분의 50 경감</u></p> <p>가.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나.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u>사용료</u>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5와 같다. 단,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다.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라.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마.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바.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사.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아.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현행	개정안
<p>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p> <p>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p> <p>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p> <p>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p> <p>하. 어르신</p> <p>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100분의 30 경감</p> <p>가. 어린이</p> <p>나. 청소년</p> <p>다.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p> <p>라.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가족</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5. <u>100분의 20 경감</u></p> <p>가. 「<u>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u>」 제2조제3호에 따른 <u>다자녀 가정</u></p> <p>제9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p> <p>1. <u>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u></p> <p>가. <u>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u></p> <p>나. <u>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u></p> <p>다. <u>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공제 후 반환</u></p>	<p><삭 제></p> <p>제9조(사용료 반환) ① ----- ----- ----- -- <u>않으며 반환할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u></p> <p>1. <u>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u></p> <p>가. <u>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u></p> <p>나. <u>사용개시일 ----- -----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u></p> <p>다. ----- ----- <u>미이용일수(횃수)</u> ----- <u>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u></p>

현행	개정안
<p>2. <u>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u></p> <p>3. (생략)</p> <p>4. <u>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반환한다.</u></p> <p>가. <u>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u></p> <p>나. <u>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u></p>	<p>2.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p> <p>가. <u>사용개시일 5일 전 취소: 전액</u></p> <p>나. <u>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u></p> <p>다. <u>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횃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u></p> <p>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u>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u></p> <p><u>②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100원미만은 절사한다.</u></p> <p><u>1. 사용시작일 3일 전 취소신청: 전액 반환</u></p> <p><u>2.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후 반환</u></p> <p><u>3.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u></p> <p><u>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u></p>	<p><u><삭 제></u></p> <p><u>② ----- 제1항-----</u> <u>-----</u> <u>----- 근</u> <u>무일 3일 -----.</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p> <p>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사용료를 납부하지 <u>아니한</u> 때.</p> <p>4. (생략)</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p> <p>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않은</u> ----- --.</p> <p>4. (현행과 같음)</p>

[별표 2]

【현 행】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공휴일	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당		10,000		3시간 기준
	월회원	개인	30,000(40,000)		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클럽		20,000			
중구테니스장	코트당	주간	20,000		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야간	30,000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5,000 (35,000)	40,000 (5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80,000	2시간 기준
중구수영장	1일 입장료	성인	5,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4,500		
		어린이	4,000		
	월회원	성인	60,000		
		청소년	55,000		
		어린이	50,000		
중구야구장	체육경기		80,000 (100,000)	120,000 (150,000)	3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160,000	240,000	3시간 기준
학성다목적체육관	월회원	개인	25,000		2시간 기준
		클럽	12,500		
	대관료		30,000		1시간 기준
약사다목적체육관	월회원		30,000		1시간 기준
	일회원	3,000	4,000		
		대관료		30,000	

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안】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공휴일	비 고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당		10,000(15,000)		3시간 기준
	월회원	개인	30,000(45,000)		1인기준 (야간조명포함)
		클럽	20,000(30,000)		
중구테니스장	코트당	주간	20,000(30,000)		3시간기준 (야간조명포함)
		야간	30,000(45,000)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 중구다목적구장	체육경기		25,000 (37,500)	40,000 (60,000)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50,000 (75,000)	80,000 (120,000)	
중구수영장	1일 입장료	성인	5,000(7,5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4,500(6,750)		
		어린이	4,000(6,000)		
	월회원	성인	60,000(90,000)		
		청소년	55,000(82,500)		
		어린이	50,000(75,000)		
중구야구장	체육경기		80,000 (120,000)	120,000 (180,000)	3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160,000 (240,000)	240,000 (360,000)	
학성다목적체육관	월회원	개인	25,000(37,500)		2시간 기준
		클럽	12,500(18,750)		
	대관료		30,000(45,000)		1시간 기준
약사다목적체육관	월회원		30,000(45,000)		1시간 기준
	일회원(테이블당)	8,000 (12,000)	10,000 (15,000)		
		대관료		30,000(45,000)	

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월회원의 코트 사용은 공휴일을 포함한 월중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예약 행사 및 대회는 우선 사용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0분의 10 할인한다.
5. 중구야구장의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 사용 요금은 중구민외 참여 인원이 1/2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별표 4]

【현 행】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강습회수	강 습 비	비 고
테니스	개인강습	주 4회	150,000	1명 1회 20분 강습
	단체강습	주 4회	90,000	1팀(4명 이상) 1회 50분 강습
수 영	성인	주 4회	70,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65,000	
	어린이		60,000	
탁구		주 2회	50,000	
배드민턴		주 2회	50,000	
생활체조		주 2회	25,000	

1. 단, 1명 동시 2종 이상의 강습프로그램 수강시, 강습료가 낮은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50% 할인한다.
2.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50% 할인한다.
3.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 할인한다.

[별표 4]

【개정안】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강습회수	강 습 비	비 고
테니스	개인 및 소그룹강습	주 4회	150,000 (165,000)	1팀(1~4명) 1회 20분 강습
	단체강습	주 4회	90,000 (99,000)	1팀(5명 이상) 1회 50분 강습
수 영	성인	주 4회	70,000 (77,000)	20인 이상 단체 입장시 20% 할인
	청소년		65,000 (71,500)	
	어린이		60,000 (66,000)	
탁구		주 2회	50,000 (55,000)	
배드민턴		주 2회	50,000 (55,000)	
생활체조		주 2회	25,000 (27,500)	

1. 팔호안의 요금은 중구지역 이외의 주민(단체 포함) 사용시 요금임
2. 1명이 동시 2종 이상의 강습프로그램 수강시 강습료가 낮은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50% 할인한다.
3. 한국석유공사 임직원(가족포함)이 중구수영장 및 중구테니스장 이용시에는 이용료를 50% 할인한다.
4. 수영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를 10% 할인한다.

[별표 5]

【신 설】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제8조 관련)

감면율	감면 대상
100분의 10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전국 또는 광역시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중구 대표팀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주, 주16시간 이내)
100분의 5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5. 어르신 16. 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나 중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행사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30	1. 어린이 2. 청소년 3.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4.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100분의 20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2.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비고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이용한 횟수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계약상 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 이용한 횟수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
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요
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교육체육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박정흠
- 연락처: (052)290-3671